질병관리청 **보 도 참 고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 보도 일시 | 2023.1.27.(금) 배포 즉시 | 배포 일시 | 2023.1.27.(금) 11:00 |
|---|---|---|---|
| 담당 부서 | 중앙방역대책본부<br>위기소통팀 | 책임자 | 팀 장 고재영 (043-719-7780) |
| | | 담당자 | 사무관 박장호 (043-719-9342) |

# 고위험군 영유아(6개월-4세)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주요 내용**

□ 영유아(6개월-4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고위험군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에 대비하고자,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사전예약(1.30.), 당일접종(2.13.), 예약접종(2.20.) 시작

## 1. 영유아(6개월-4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지영미 청장, 이하 '추진단')은 동절기 재유행의 지속, 신규 변이의 출현 등에 따라,

○ **영유아(6개월~4세), 특히** 면역저하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에 대비**하고자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화이자)**은 **지난 1.12.(목) 국내 도입**되었으며,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은 **소아청소년 전문가 자문회의(1.12.),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1.16.) 및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1.19.)**를 거쳐 수립되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 1 접종 필요성

□ **영유아(6개월~4세)**는 일반적으로 **성인에 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 위험이 높지 않으나,** ▲이미 접종을 시행 중인 **소아(5~11세) 및 청소년(12~17세)에 비해 중증·사망 위험이 높고,** ▲**증상발생 또는 진단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으며,**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영유아의 경우 중증·사망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접종이 필요하다.

□ 먼저, **질병관리청 역학분석결과**에 따르면 **영유아의 중증·사망 위험**은 이미 접종을 시행 중인 **5세 이상 소아 및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망률)** '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중 0-4세는 17명, 확진 10만명 당 1.49명**으로, **5-9세(1.05명), 10-19세(0.54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입원률)** '22년 11월~12월 **코로나19로 인한 17세 이하 입원환자 6,678명 중 51%(3,401명)가 0~4세로 확인**되었다.

| | 0-4세 | 5-11세 | 12-17세 | 계 |
|---|---|---|---|---|
| 1회 이상 입원(명) | 3,401 | 1,679 | 1,598 | 6,678 |
| 입원률*(비중**) | 0.62 (50.9%) | 0.30 (25.1%) | 0.29 (23.9%) | 1.21 (100%) |

* 17세 이하 확진자 552,294명 대비 입원환자 수 ** 17세 이하 입원환자 6,678명 중 비중

□ 영유아는 **증상발생 또는 진단일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아, 적기에 적절한 의료조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

○ 0-4세 사망자 17명의 **진단부터 사망까지 소요일수를 분석**한 결과, **진단 당일 사망이 24%(4명), 6일 이내 사망이 100%(17명)**로 확인되었다.

| 구분 | 계 | 진단 후 사망까지 기간 | | | | |
|---|---|---|---|---|---|---|
| | | -1일 | 0일 | 1-6일 | 7-14일 | 15-21일 |
| 수 | 17 | 0 | 4 | 13 | 0 | 0 |
| 비율(%) | 100 | 0 | 23.5 | 76.5 | 0 | 0 |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영유아의 사망비율이 높아**, 이들에 대한 접종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0-4세 사망자 17명 중 17.6%(3명)가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주요 기저질환으로는 무뇌수두증, 요붕증, 암, 자폐증 등이 확인되었다.

## 2 효과 및 안전성

□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품목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및 효과성이 확인·검증되었다.**

○ **미국의 FDA, 유럽의 EMA 등 주요 국가의 의약품 규제기관**이 **허가·승인한 백신이며,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접종**을 **시행 중**에 있다.

□ **안전성**에 대해, **미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6개월~4세, 4,526명)에 따르면, **백신을 3회 접종한 백신접종군(3,013명)의 전반적인 안전성 정보가 위약군(1,513명)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백신 접종 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상사례로 주사부위 통증, 피로, 발열** 등이 있었으며, **대부분은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다.

**<화이자사 안전성 관련 임상시험 결과>**

ㅇ 백신 접종 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상사례는 2세-4세에서 주사부위 통증, 피로, 주사부위 발적, 설사, 발열 등이었고,

ㅇ 6개월-2세미만에서 자극과민성, 졸음, 식욕감퇴, 주사부위 압통, 주사부위 발적, 발열 등이었으며,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

□ **효과성 측면**에서는, **기초접종(3회)을 완료한 영유아(6개월~4세)**와 기초접종(2회)를 완료한 16~25세의 접종 1개월 이후 면역반응을 비교한 결과, **중화항체가 비율과 혈청반응률**(백신접종 전 대비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하는 대상자 비율)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 3 세부 접종계획

□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만 6개월~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한다.

* '18년생 생일 미도과자~'22년 7월생 생일 도과자('23년 1월 기준)

**<영유아(6개월-4세) 고위험군 범위>**

- 심각한 면역 저하자 : 고용량 스테로이드(prednisone 기준 20 mg/일 또는 2 mg/kg/일 이상)를 장기간(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혈액암 등 항암치료 중인 경우,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환자, 중증면역결핍질환 및 HIV 감염 등
- 골수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 또는 키메라 항원 T 세포(CAR-T) 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 중증뇌성마비 또는 다운 증후군(삼염색체증 21)과 같이 일상생활에 자주 도움이 필요한 장애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고위험군 영유아(6개월-4세)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권고

□ 접종에는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 활용되며, **3회의 기초접종을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1·2·3회** 실시한다.

**<화이자 영유아용 백신 품목허가 사항>**

- **(정식명칭)** 코미나티주 0.1mg/mL(6개월-4세용)(토지나메란)
- **(효능·효과)** **6개월-4세**에서 코로나19 예방
- **(용법·용량)** 0.2mL(3㎍)씩 **3회 투여(3주 후 2회차, 최소 8주 후 3회차** 투여)
- **(주 성 분)** '코미나티주', '코미나티주0.1mg/mL',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와 유효성분(토지나메란) 동일

□ **접종기관**은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있는 **별도의 지정 위탁의료기관 약 1,000개소**이며, 특히 **고위험군 영유아가 주된 접종 대상**인 점을 감안하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도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에서 1.30.(월)부터 확인**할 수 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사전예약**은 1.30.(월)부터 **진행**하며, **2.13.(월) 당일접종, 2.20.(월) 예약접종을 시작**한다.

○ **사전예약은 온라인(ncvr.kdca.go.kr)이나 전화(지자체콜센터)**를 통해 예약할 수 있고, **당일접종의 경우 의료기관에 전화 연락하여 예비명단 등록 후 접종**할 수 있다.

○ 영유아의 경우, **접종의 안전성과 이상반응 모니터링, 예진표 작성**을 위해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동반**하여야 한다.

**<영유아 백신접종 방법>**

**○ 예약방법**

**(사전예약)** 온라인(보호자 대리예약, ncvr.kdca.go.kr), 전화예약(지자체콜센터)
**(당일접종)** 의료기관에 전화 연락하여 예비명단 등록 후 접종
**(현장접종)** 사전예약 없이 또는 타 진료 목적으로 의료기관 방문시 현장에서 접종 가능
* 단, 해당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한 백신을 보유하고 있고, 자체 진료업무에 차질이 없는 경우

**○ 접종기관**

-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 목록은 1월 30일(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
  * (게시경로)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ncv.kdca.go.kr) > 예방접종현황 >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기관

□ 접종 후 **건강상태의 관찰 및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대응**을 위하여, **초기 접종자 1천명을 대상으로 능동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 **문자 수신 및 능동감시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접종 후 0~7일 동안 예진시 **등록된 휴대전화로 URL을 발송**하여, **접종 후 건강상태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 추진단은 "**영유아의 백신접종**에 대한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되었으므로, 면역저하나 기저질환 보유 등으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영유아는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 메인화면 좌측 ▶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우측 하단)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Q&A
2.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포스터
3.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보호자용)
4.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Q&A (보호자용)
5.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의료인용)
6. 1단계 의무 조정시(1.30.)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7. 감염병 보도준칙

| | | | | | |
|---|---|---|---|---|---|
| 담당 부서 <총괄> |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 | 책임자 | 팀 장 | 고재영 | 043-719-7780 |
| | | 담당자 | 사무관 | 박장호 | 043-719-9342 |
| 담당 부서 <예방접종> |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 접종기획팀 | 책임자 | 팀 장 | 황경원 | 043-913-2310 |
| | | 담당자 | 사무관 | 김태식 | 043-913-2311 |
| 담당 부서 <마스크 관련> |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 | 책임자 | 팀 장 | 곽 진 | 043-719-7140 |
| | | 담당자 | 사무관 | 김진명 | 043-719-9064 |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 붙임 1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Q&A

**Q. 영유아용(6개월~4세)는 성인에 비해 위중증률도 낮은데 접종하는 이유는?**

○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위중증률이 낮으나, **소아(5세-11세)나 청소년(12-17세)에 비해서는 사망·입원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 **동절기 유행상황,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신규변이 지속 출현** 등에 따라, 그간 **접종기회가 없었던 영유아(6개월~4세)**, 특히, **고위험군 접종을 통한 보호** 대책 마련 필요

○ 또한, 영유아의 경우 **증상발현 또는 진단 즉시 사망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적기 치료를 통한 대응이 매우 어려우므로 **접종을 통한 선제적 대응 필요**

**Q.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백신접종에 화이자 백신만 이용하는 이유는?**

○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사 백신 뿐임**('22. 11. 25.)

**<참고> 영유아용 백신 접종국가**

| 구분 | 승인 | 접종 |
|---|---|---|
| **화이자** |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싱가포르, 유럽, 영국 |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
| **모더나** |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 미국, 캐나다, 호주 |

**Q. 고위험군에 집중하지 않고, 일반 영유아까지 접종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면역저하나 기저질환 보유 등으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대상집단에게 접종을 적극 권고**함

○ **다만**, 영유아의 백신접종에 관해서는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되고 있고,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사망의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 접종이 **허가된 연령 전체에 대해서도 기회 제공**

○ 참고로, **영유아 접종을 시행 중인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당 연령 전체를 대상으로 접종 중임**

*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 붙임 2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포스터




## 접종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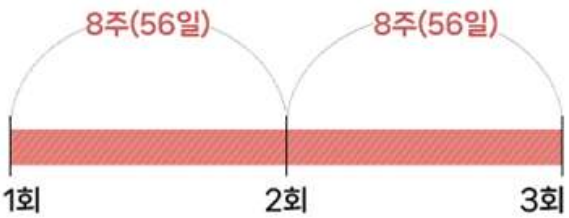
- 6개월~4세 모든 영유아 **특히, 고위험군 적극 권고**

## 백신종류

- 영유아용 화이자백신

## 접종간격 및 횟수

- 8주(56일)간격으로 3회 접종




## 예약방법

**사전예약** 온라인(보호자 대리예약, https://ncvr.kdca.go.kr)
2023년 1월 30일~ ( 2023년 2월 20일부터 접종가능)

**당일접종** 의료기관에 전화 연락하여 예비명단 등록 후 접종
(2023년 2월 13일 ~)

**현장접종*** 사전예약 없이 또는 타 진료 목적으로 의료기관 방문 시 현장에서 접종 가능
(2023년 2월 13일~)

* 단, 해당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한 백신을 보유하고 있고, 자체 진료업무에 차질이 없는 경우

## 영유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 목록

※ 1월 30일(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게시경로 :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https://ncv.kdca.go.kr) ▶ 예방접종현황 ▶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기관

**※ 영유아의 경우 접종의 안전성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예진표 작성을 위해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 붙임 3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보호자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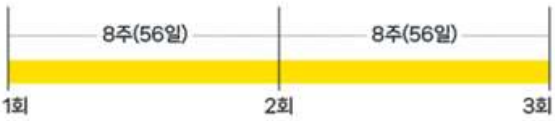



## 개요

대상 6개월 ~ 4세 모든 영유아
**고위험군 적극 권고**

백신 영유아용 화이자백신

접종횟수 및 간격 **8주**(56일) 간격으로 **3회**접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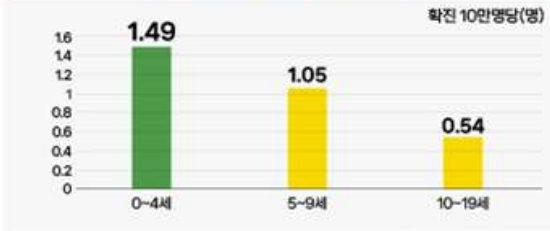

## 고위험군

- 심각한 면역저하자 :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중인 경우, 혈액암 등 항암치료 중인 경우,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환자, 중증면역결핍질환 및 HIV 감염 등
- 골수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 키메라 항원 T 세포(CAR-T) 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 중증 뇌성마비 또는 다운 증후군(삼염색체증 21)과 같이 일상 생활 활동에 자주 도움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경우
- 이외에도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권고

##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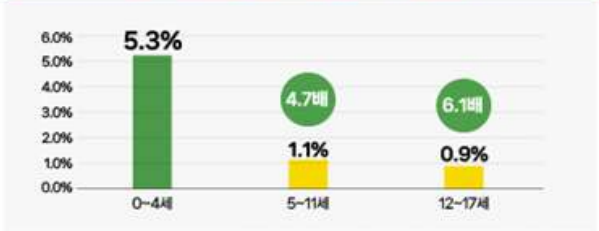
- 영유아(0~4세)도 감염 시 위험할 수 있고(2023년 1월 2주기준, 국내누적 사망 17명), 고위험군은 더욱 위험합니다.
- 영유아는 큰 아이들보다 입원율과 치명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위험이 더 큽니다.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누적치명률**




*(2020.1월~2023.1월 2주)

**소아청소년의 연령대별 코로나19 입원율**




* (22년 11월 – 12월) 17세 이하 확진자 중 입원환자 비율

## 효과성

- 오미크론 유행시기에 코로나19 감염 영유아 100명 중 73명은 백신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안전성

- 영유아용 화이자백신은 식약처의 안전성 검증을 거쳐 품목허가된 백신입니다.
- 미국에서 실제 접종한 결과 대부분 일반적인 이상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6개월~2세) 보챔, 졸려함, 발열, 통증, 식욕부진 등
  (3세~4세) 주사부위 통증, 피로, 발열 등
- 우리나라 5-11세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율은 전 연령의 신고율 보다 약 4배 낮았습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2023.1.27.

질병관리청

6개월~4세

#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보호자용

## 영유아 백신접종 방법

**예약방법**

(사전예약) 온라인(보호자 대리예약, ncvr.kdca.go.kr)

(당일접종) 의료기관에 전화 연락하여 예비명단 등록 후 접종

(현장접종) 사전예약 없이 또는 타 진료 목적으로 의료기관 방문시 현장에서 접종 가능

* 단, 해당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한 백신을 보유하고 있고, 자체 진료업무에 차질이 없는 경우

**접종기관**

영유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 목록은 1월 30일(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

* 게시경로 :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ncv.kdca.go.kr)>예방접종현황>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기관

영유아의 경우 접종의 안전성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예진표 작성을 위해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 | |
|---|---|
| 접종 전 | •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의사의 예진 후 접종 받기<br>•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열(37.5℃ 이상)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접종을 연기 |
| 접종 시 | • 백신은 생후 6개월~12개월 미만은 허벅지 가까이에,<br>만 1세 이상은 허벅지 또는 어깨 가까이에 주사하기 때문에 접종하기 쉬운 옷으로 준비하기 |
| 접종 후 | •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이상반응 발생여부 관찰하기<br>• 귀가 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일주일정도는 고강도의 운동 및 활동 자제하기<br>• 접종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하며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의 진료 받기 |

**단 ! 다음과 같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 1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2차 접종 금지

* 아나필락시스: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의 발진, 빠른 심장 박동, 현기증, 쇼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 약(장 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등에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기록해 주세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음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증상이 나타나는 심근염·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음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 붙임 4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Q&A (보호자용)




**Q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다른 국가예방접종은 동시에 접종할 수 있나요?**

A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다른 예방접종과 별도 간격을 두지 않고 동시접종도 가능하므로,
필수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 모두 일정에 맞춰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코로나19 백신과 다른 백신은 동시접종이 가능합니다.

**Q 세 번째 접종을 맞아야 하는 시기에 5살이 되었습니다.
5-11세용 소아백신으로 접종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세 번째 접종 시점에 5세가 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6개월-4세용 화이자백신으로 접종간격(8주)을 준수하여 접종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Q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국가가 있나요?**

A 미국은 약 87만명의 영유아가 기초접종을 완료하였고('23.1.18.기준),
일본은 영유아용 화이자백신 235,388도즈를 접종하였습니다('23.1.25.기준).
그 밖에 캐나다, 호주, 싱가폴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이상반응 발생여부 관찰하기
귀가 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일주일정도는 고강도의 운동 및 활동 자제하기
접종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하며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의 진료 받기
* 예방접종 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 준비, 예방접종 후 몸살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해열진통제 복용

A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 가슴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의 [이상반응]-[심근염·심낭염 진단가능 병원] 또는 [소아심장세부전문의 근무 병원]을 통해 지역별 심근염·심낭염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안내 중입니다
- 접종부위의 통증, 부기, 발적이나 발열 등이 접종 후 2일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
- 접종 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A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세요
- 숨쉬기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 입술·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나이가 어릴수록 증상표현이 미숙할 수 있으니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 Q 영유아 접종자 대상 피해보상 및 지원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A**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해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보상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실시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이상반응 신고를 전제로 하며 이상반응 신고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 시 진단한 의사가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되지 않을 시 접종받은 분 또는 보호자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nip.kdca.go.kr)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전송받은 건강상태 확인하기"를 통해 직접 신고 가능함
- 피해보상 신청은 이상반응 신고와 별도로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 서류의 종류 및 서식은 코로나19 예방접종누리집(www.코로나19예방접종.kr)에서 확인 가능함
-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하시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초피해조사,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정밀피해조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인과성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됨

**A** 한편, 관련성 의심질환(심의 기준④-1)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 사업에 따라 의료비(1인당 5천만원 상한) 또는 사망자 위로금(1인당 1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비 및 사망자 위로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및 지원 금액 검토 등을 거쳐 지원 받을 수 있음

### 심의 기준 표

| 구분 | 심의 기준 | 보상여부 |
|---|---|---|
| ①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 | 피해보상 |
| ②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 |
| ③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 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경우 | |
| ④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①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④-1) | 관련성 의심질환 환자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 |
| | ②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④-2) | 보상 및 의료비 지원 제외 |
| ⑤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 ①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③ 또는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 보상 및 의료비 지원 제외 |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붙임 5**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의료인용)**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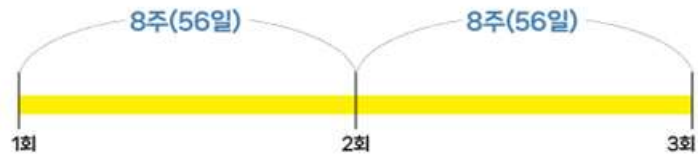
대상 6개월 ~ 4세 모든 영유아

**고위험군 적극 권고**

백신 영유아용 화이자백신

접종횟수 및 간격 **8주**(56일) 간격으로 **3회**접종

접종방법 희석된 백신 0.2mL를 근육주사




* 생후 6개월~12개월 미만 : 대퇴부 전외측 / 생후 12개월 이상 : 대퇴부 전외측 또는 삼각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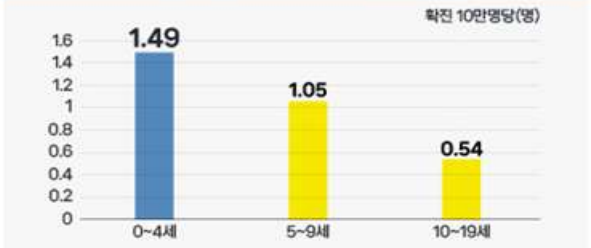
## 고위험군

- 심각한 면역저하자 :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중인 경우, 혈액암 등 항암치료 중인 경우,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환자, 중증면역결핍질환 및 HIV 감염 등
- 골수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 키메라 항원 T 세포(CAR-T) 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 중증 뇌성마비 또는 다운 증후군(삼염색체증 21)과 같이 일상 생활 활동에 자주 도움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경우
- 이외에도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권고

##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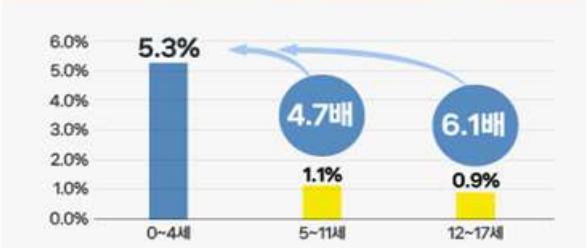
- 영유아(0~4세)도 감염 시 위험할 수 있고(2023년 1월 2주기준, 국내누적 사망 17명), 고위험군은 더욱 위험합니다.
  - 사망자는 진단 2일(중앙값)만에 사망하는 급격한 경과를 보임
- 영유아는 큰 아이들보다 입원율과 치명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위험이 더 큽니다.
  - 17세이하 입원환자 중 0~4세가 51%를 차지함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누적치명률**




*(2020.1월~2023.1월 2주)

**소아청소년의 연령대별 코로나19 입원율**




* (22년 11월 – 12월) 17세 이하 확진자 중 입원환자 비율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2023.1.27.

질병관리청

6개월~4세

#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의료인용

## 효과성

**오미크론 유행 시기, 영유아 코로나19 백신의 유용성이 확인되었습니다.**

- 3회접종 완료 시 코로나19 감염예방효과는 73.2%

| | 이전 감염력이 없는 영유아의 3회 접종 후 | | |
|---|---|---|---|
| | 6개월-4세 | 6-23개월 | 24-48개월 |
| 감염예방효과 | 73.2% | 75.8% | 71.8% |
| 95% CI | (43.8~87.6) | (9.7~94.7) | (28.6~89.4) |

※ (분석기간·대상) '22.3월 ~ '22.6월 미국, 핀란드, 폴란드, 스페인, 브라질에서 6개월-4세 4,526명(6-23개월 1,776명 및 2-4세 2,750명) 대상으로 화이자 영유아 백신의 임상시험(placebo-controlled study)을 통한 백신효과 평가

## 안전성

**영유아용 화이자백신은 식약처의 안전성 검증을 거쳐 품목허가된 백신입니다.**

- 백신을 3회 접종한 그룹(3,013명)의 전반적인 증상 발생정도는 위약군(1,513명)과 유사함

**미국에서 실제 접종한 결과 대부분 일반적인 이상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 미국에서 '22.6.18~'22.8.21까지 화이자 코로나19 영유아 단가백신을 접종한 0~4세 대상자(599,457명)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증상은 경증~중등도였습니다.

(6개월~2세)보챔, 졸려함, 발열, 통증, 식욕부진 등
(3세~4세)주사부위 통증, 피로, 발열 등

**우리나라의 5-11세의 화이자 단가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율은 전 연령의 신고율 보다 약 4배 낮았습니다.**

**또한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상사례 보고율이 접종 1,000건당 0.48건(캐나다), 0.09건(대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Q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다른 국가예방접종은 동시에 접종할 수 있나요?**

A 코로나 19 예방접종은 다른 생백신 또는 사백신의 동시접종에 따른 면역원성이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동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코로나19 백신과 다른 백신의 동시접종이 가능합니다.

**Q 세 번째 접종을 맞아야 하는 시기에 5살이 되었습니다. 5-11세용 소아백신으로 접종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세 번째 접종 시점에 5세가 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6개월-4세용 화이자백신으로 접종간격(8주)을 준수하여 접종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Q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국가가 있나요?**

A 미국은 약 87만명의 영유아가 기초접종을 완료하였고('23.1.18.기준), 일본은 영유아용 화이자백신 235,388도즈를 접종하였습니다('23.1.25.기준). 그 밖에 캐나다, 호주, 싱가폴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영유아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은 어느 부위에 접종하나요?**

A 생후 6개월~12개월 미만 영아는 대퇴부 전외측에, 만 12개월 이상 유아는 대퇴부 전외측 또는 삼각근에 접종받습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 붙임 6 1단계 의무 조정시(1.30.)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해운법(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해운법(제2조)에 따른 여객선** 포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운송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근,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 포함
-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 붙임 7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